

환경오염피해분쟁조정제도



金 鐘 敏

〈중앙환경분쟁 조정위원회〉

I. 머리말

1. 환경오염 문제의 대두

'70년대 초부터 우리나라는 산업구조면에서 중화학공업을 중심으로 급속히 공업화가 진행되면서 산업활동에 있어서 생산물량이 증가하기 시작했고, 에너지 소비량이 급증함과 동시에 산업체에서 사용하는 각종 원자재가 다양해졌다. 이에 따라 사업장으로부터 배출되는 각종 오염물질도 질적·양적인 측면에서 현저히 증가하게되어 대기오염, 수질오염, 소음·진동의 발생 등으로 인한 국민생활상의 환경권 침해와 관련된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기 시작했다.

2. 환경오염피해분쟁의 특징

환경오염피해분쟁은

첫째, 분쟁의 당사자가 다수이며, 특히 가해자가 다수인 경우에는 책임분담이 불명확하게 되기 쉬우며 가해자를 특정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서 피해자측에 불리한 경우가 많다.

둘째, 가해행위와 피해간의 인과관계의 규명이 곤란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가해자가 부정하는 경우에는 피해자가 인과관계를 입증할 필요가 있으나 전문적인 조사·분석없이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셋째, 환경오염피해는 생명, 신체, 생활환경, 동식물 등 여러곳에서 발생하고 그 양태도 다양하며 사람의 생명, 신체 등 건강에 관한 분쟁에 관하여는 사회적인 여파를 고려하여 신속히 해결할 필요성이 있다.

넷째, 피해자의 청구사항은 손해배상의 청구 외에 조업에 관한 것, 설비에 관한 것 등 유지청구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며 그 범위가 광범위하다.

다섯째, 환경오염피해로 인하여 자연환경 자체가 오염되거나 파괴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지역사회전반에 걸친 문제로서 처리의 대상이 될 것이다.

이상과 같이 환경오염피해분쟁의 처리에 관하여는 사법적 구제만으로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피해자가 재판을 받을 권리를 확보하면서 선택적으로 행정분야에서 처리를 할 필요성이 요구된다.

3. 환경오염피해분쟁조정제도의 필요성

환경오염피해로 인한 분쟁이 발생한 경우 양 당사자가 개인적인 차원에서 당초 양보에 의하여 분쟁을 해결하는 방식과 사법적인 재판절차에 의하여 피해를 구제받는 방식이 대체로 사용되고 있는데, 두가지 방식은 해결가능성 및 경제적·시간적인 부담 측면에서 각기 장·단점이 있다. 이러한

두가지 종류의 분쟁해결방식의 장점인 공평타당성 및 절차의 신속성을 취하되, 행정기관이 지니고 있는 전문성과 과학적인 지식·정보를 충분히 활용하기 위하여 행정상의 구제절차로서 환경오염피해분쟁조정제도를 마련한 것이다.

이상의 점에 유의하면서 현행 환경오염피해분쟁조정법상의 분쟁조정절차에 대하여 설명하기로 한다.

II. 환경오염피해의 조사 및 분쟁사건의 처리

1. 환경오염피해 및 피해배상의 범위

환경오염피해라 함은 사업활동 기타 사람의 활동에 따라 발생되는 대기 오염, 수질오염, 토양오염, 해양오염, 방사능오염, 소음·진동, 악취 등으로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피해를 주는 상태(환경정책기본법 제3조제4호)가 인적 및 물적으로 상당한 범위에 미치는 경우를 말하며, 사업장 등에서 발생되는 환경오염으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한 사실이 있는 때에는 당해 사업자는 그 피해를 배상하여야 하며, 사업장 등이 2개 이상 있는 경우에 어느 사업장에 의하여 환경오염피해가 발생한 것인지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각 사업자는 연대하여 배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환경정책기본법 제31조)

2. 환경오염피해의 조사

가. 환경오염피해의 인지

1) 매체를 통한 인지

심사관은 항상 신문, 라디오, TV, 기타 가능한 방법으로 환경오염피해 발생 가능성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파악하여 오염피해의 발생으로 인한 분쟁사건이 상당히 확대된 후에 해결하는 것보다는 사전에 조치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2) 유관기관과의 협조

환경오염피해로 인한 분쟁유발 가능성에 대하여 관계행정기관(환경처, 지방환경청, 시·도)과 적극협조하여 관련정보 파악에 노력을 기울인다.

3) 조사자료의 수집 및 보전

심사관은 환경오염피해 발생사실을 인지하였을 때는 분쟁조정 신청전일지라도 그 사실을 면밀히

조사하여 알선·조정 또는 재정절차 진행에 필요한 자료를 사전에 수집하고, 차후 오염피해현장의 유지·보전이 곤란하거나 증거인멸 또는 변형이 우려될 때에는 사진촬영 기타의 방법 등으로 그 상황을 명확히 보존하여야 한다.

나. 관계전문가의 조사 업무 협조

특정사건에 관한 전문적인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대기, 수질, 폐기물, 해양, 자연생태계 등 해당분야별로 각각 10인의 관계전문가를 위촉하여 환경오염의 피해로 인한 분쟁의 조정에 필요한 사실조사와 인과관계의 규명, 환경오염피해액의 산정 및 산정기준의 개발과 연구를 행하게 한다(법 제8조 제2항, 시행령 제4조)

다. 위원회의 조사권

위원회는 분쟁조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당사자, 참고인, 또는 감정인에 대하여 출석하여 진술, 감정하게 하거나 문서, 물건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위원 또는 직원으로 하여금 공장, 사업장, 기타 분쟁사건과 관련된 장소에 출입하여 관계문서 또는 물건을 조사·열람함으로서 분쟁사건의 해결에 필요한 제반자료들을 적극적으로 수집하여야 한다.(법 제13조, 시행령 제7조 및 제8조)

3. 분쟁사건의 처리기관

○환경오염피해로 인한 분쟁은 사건이 발생한 시·도에 설치되어 있는 지방환경위원회에 알선 또는 조정절차를 통해서 해결하고, 재정사건이나 2이상의 시도에 걸치는 분쟁사건, 지방환경위원회가 스스로 조정하기 곤란하다고 결정하여 이송한 분쟁사건 및 심사관이 알선·조정을 신청한 분쟁사건은 중앙환경위원회에서 해결처리 한다(법 제3조)

4. 규칙제정

중앙환경위원회는 중앙환경위원회 또는 지방환경위원회의 소관 사무에 관한 처리 절차와 환경오염피해액 산정기준 및 기타 필요한 사항에 관한 규칙을 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방환경위원회의 업무처리에 관한 실질적인 지도·감독을 행함(법 제14조)

III. 분쟁조정의 방식

1. 알선·조정·재정의 신청

가. 알선·조정의 신청

1) 당사자에 의한 신청

환경오염피해분쟁이 발생한 때에는 관계 당사는 중앙 또는 관할지방 환경위원회에 알선 또는 조정을 신청하여야 한다.(법 제15조 제1항)

환경오염피해청구액이 알선 또는 조정의 신청은 양당사자 누구나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신청 내용으로는 금전상의 손해배상청구외에 조업 정지, 원재료의 변경, 설비의 개체 오염방지시설의 설치 내지 보완이나 조업시간의 변경·제한 내지 조업방법의 변경, 공장이전과 같은 유지 청구적인 사안들까지 제한없이 포함된다.

2) 심사관에 의한 신청

환경오염피해분쟁사건을 조사한 심사관은 피해 당사자의 동의를 얻어 알선 또는 조정을 신청한다(법 제15조 제2항)

나. 재정의 신청

피해당사자는 중앙환경위원회에 손해배상의 책임에 대한 재정을 신청하고, 알선위원 또는 조정 위원회에서 알선 또는 조정을 중단하거나 당사자가 조정안의 수락을 거부한 경우에는 당사자의 일방 또는 쌍방은 재정을 신청할 수 있다(법 제 16 조)

다. 신청서상의 기재사항 및 제출서류

1) 알선·조정

신청자는 당사자(대표당사자)의 성명 또는 명칭 및 주소, 오염발생 장소 및 피해가 발생한 장소, 분쟁의 결과, 알선·조정을 구하는 취지 및 이유 기타 참고 자료를 포함한 신청서 정본과 상대방 수에 따른 부분을 작성하여 제출하고, 위원회는 신청서 부분을 그 상대방에게 지체없이 통지하여야 한다.(시행령 제 9조 제1항)

2) 재정

신청자는 당사자의 성명 또는 명칭 및 주소, 오염발생장소 및 피해가 발생한 장소, 분쟁의 결과, 재정을 구하는 취지 및 이유, 재정을 구하는 피해액 및 산출근거, 알선·조정의 결과 기타 참고자료를 포함한 신청서 정본과 상대방 수에 따른 부

본을 작성하여 제출하고, 위원회는 신청서 부분을 그 상대방에게 지체없이 통지하여야 한다.(시행령 제9조 제2항)

라. 신청의 변경 및 통지

신청인 또는 참가인은 알선·조정·재정을 구하는 취지나 이유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신청내용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지체없이 통지하여야 한다.(시행령 제10조 및 제11조)

마. 신청서 등의 이송

관장이 아닌 분쟁사건이 접수된 경우에는 관계 문서 및 물건을 해당 위원회에 지체없이 이송하여 처리되도록 하되, 그러한 뜻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시행령 제12조)

2. 참가

분쟁조정사건이 조정·재정절차에 계류중인 경우 동일피해를 주장하는 자는 서면으로 참가를 신청하여 당사자의 자격으로 해당절차에 참가가 가능하고, 당사자로 참가하기 위해서는 위원회의 승인이 필요하다. 참가신청서 부분을 통지 받은 상대방은 10일이내에 이에 대한 의견을 위원회에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법 제14조, 시행령 제13조)

3. 신청의 취하

알선·조정·재정의 신청인 또는 참가인은 당해 절차가 종결되기 전에는 서면으로 신청을 취하할 수 있다(시행령 제14조)

4. 분쟁조정절차의 일반사항

가. 알선·조정·재정절차의 분리 또는 병합

중앙 또는 지방환경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사자에게 지체없이 서면으로 그 뜻을 통지하고 알선·조정 또는 재정의 절차를 분리 또는 병합할 수 있다(시행령 제15조)

나. 당사자의 지위승계

알선·조정 또는 재정절차의 계류중에 당사자가 사망, 능력의 상실 기타 사유로 절차를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법령에 의하여 그 지위를 승계한 자의 서면신청 또는 위원회 직권에 의하여 당

사자의 지위를 승계하도록 하되, 신청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심사하여 승계여부를 결정하고 당사자의 지위승계에 대하여 지체없이 서면으로 그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 (시행령 제16조)

다. 심사관의 출석

조정·재정위원회는 당해 위원회의 회의에 심사관을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진술하게 한다 (시행령 제17조)

5. 알선

가. 알선의 의의

알선위원이 환경오염피해분쟁에 관하여 당사자 간의 분쟁의 자주적 해결을 도와주고 촉진하기 위하여 그간의 교섭과 상의가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중개하는 제도이다.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분쟁의 대상이 되는 사안에 대하여 면밀히 조사한 후 사건의 성격에 맞는 대안을 적극적으로 제시한다.

피해의 내용이 생명·신체상의 피해나 재산상의 현저한 침해가 아닌 유지 청구에 가까운 사안인 경우에는 조업형태의 변경, 시설의 설치, 개선, 대체 등 적절한 대안을 제시하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도록 유도하고, 합의서 작성시에는 합의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의 사후처리 방법(손해배상) 등을 구체적으로 적시하도록 한다.

또한 피해의 내용이 재산상, 생명·신체상의 피해인 경우에는 민사상의 손해배상 산정방법이나 공용수용시의 감정평가방법 등을 참조하여 배상액에 관한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도록 한다.

나. 알선위원 등의 지명

신청서가 접수된 날부터 7일이내에 중앙 또는 지방환경위원회 위원중에서 매 사건마다 3인 이내의 위원을 지명하고, 당사자에게 그 명단과 분쟁 절차에 관여하는 직원, 심사관 및 관계전문가의 명단을 통지하여야 한다. (법 제18조, 시행령 제18조)

다. 알선위원의 임무

알선위원은 당사자간의 분쟁을 알선하고 쌍방이 주장하는 요점을 확인하여 사건이 공정하게 해결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법 제19조)

라. 알선의 중단

알선으로는 분쟁의 해결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거나 알선중인 분쟁에 대하여 조정 또는 재정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알선이 중단된 것으로 간주하여 당사자에게 그 뜻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법 제20조, 시행령 제19조)

6. 조정

가. 조정의 의의

제3기관(조정위원회)이 특정된 분쟁사건에 관하여 법정절차에 따라서 당사자간을 매개하여 상호 양보에 의하여 합의를 유도하거나 적극적으로 조정안을 작성하여 수락을 권고하여 분쟁을 해결하는 제도이다.

나. 조정위원회의 구성 등

신청서가 접수된 날부터 7일이내에 중앙 또는 지방환경위원회 위원중에서 사건마다 3인의 위원을 지명하여 조정위원회를 구성하고, 당사자에게 그 명단과 분쟁 절차에 관여하는 직원, 심사관 및 관계전문가의 명단을 통지하여야 한다(법 제21조, 시행령 제18조)

다. 조정전의 조치

조정위원회는 조정절차를 진행하기 전에 당사자에 대하여 조정의 실현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행위를 소극적으로 중지하도록 하거나 조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치를 적극적으로 권고할 수 있다(법 제22조)

라. 조정안의 수락권고 및 공표

조정위원회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는 조정절차를 마무리한 후 조정안을 작성하여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통지를 할 경우에는 3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수락을 권고하고, (법 제23조 제1항) 수락권고 기간내에 당사자가 거부의 의사표시를 서면으로 하지 아니한 때에는 조정안과 동일한 내용의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간주하여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법 제23조 제2항) 조정위원회가 조정의 수락권고를 한 때에는 조정안을 공포하게 된 이유를 적시하여 당해 조정안까지도 공포할 수 있다(법 제24조)

마. 조정의 거부

조정위원회는 당해 분쟁이 그 성질상 조정을 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거나 당사자

가 부당한 목적으로 조정을 신청한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조정거부를 결정하고 그 사실을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법 제25조)

바. 조정의 중단

조정위원회는 당해 조정사건에 대하여 당사자간에 합의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조정을 중단하고, 조정안 수락권고 후 수락거부의 통지가 지정된 기간내에 있는 때에는 당사자간의 조정이 중단된다. 이 경우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법 제26조)

사. 조정절차의 비공개

조정위원회에서 행하는 조정절차는 공개하지 아니한다(법 제27조)

7. 재정

가. 재정의 의의

서로 대립하는 당사자간의 환경오염피해의 민사분쟁에 관하여 제3자(재정위원회)가 소정의 절차에 의하여 법률적 판단을 내려 분쟁을 해결하는 제도이다.

나. 재정위원회의 구성

신청서가 접수된 날부터 7일이내에 중앙환경위원회 위원중에서 사건마다 5인의 위원을 지명하여 조정위원회를 구성하고, 당사자에게 그 명단과 분쟁절차에 관여하는 직원, 심사관 및 관계전문가의 명단을 통지하여야 한다(법 제28조, 시행령 제18조)

환경오염피해청구액이 1억원 이하인 사건은 3인의 위원으로 구성된 재정위원회에서 재정을 행한다(시행령 제22조)

다. 재정위원 및 관계직원의 제척 · 기피 · 회피

1) 재정위원회 제척

재정위원이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앙환경위원회의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그 직무집행에서 제척된다.

(법 제29조, 시행령 제23조 제1항)

가) 재정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자가 당해 사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당해 사건에 관하여 공동권리자 또는 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

나) 재정위원이 당해사건의 당사자와 친족관계

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다) 재정위원이 당해사건에 관하여 진술이나 감정을 한 경우

라) 재정위원이 당해사건에 관하여 당사자의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했던 경우

마) 재정위원이 당해사건에 관하여 대상이된 처분 또는 부작위에 관여한 경우

2) 재정위원의 기피

당사자는 재정위원이 직무집행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하며, 기피신청에 대한 결정은 재정 위원회에서 한다(법 제29조 제2항)

3) 재정위원의 회피

재정위원은 제척 또는 기피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스스로 중앙환경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그 사건의 직무집행에서 회피할 수 있다(법 제29조 제3항, 시행령 제5항)

4) 제척 또는 기피절차

제척 또는 기피신청은 그 원인을 명시하여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하고, 당해 신청이 있는 위원은 지체없이 그에 대한 의견서를 중앙환경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척 또는 기피신청의 각하 · 기각 또는 인용은 중앙환경위원회의 결정으로 행하며, 이에 대하여 불복 신청을 할 수 없다.

(시행령 제23조 제2항 내지 제4항)

5) 제척 또는 기피의 효과

재정위원회는 제척 또는 기피신청이 있는 때에는 그 신청에 대한 결정이 있는 때까지 재정절차를 중지하여야 한다(법 제30조)

6) 직원 및 관계전문가의 제척 · 기피 · 회피

재정위원의 제척 · 기피 · 회피에 관한 규정은 재정절차에 관여하는 직원 및 관계전문가에게도 이를 준용한다(법 제29조 제4항)

라. 대표당사자

1) 선정자에 의한 대표당사자 선정

분쟁의 공동이해관계자는 전원을 위하여 1인 또는 수인을 대표당사자로 선정할 수 있고, 선정자는 선정된 대표당사자를 철회 또는 변경이 가능하다. 대표당사자를 제외한 선정자는 재정절차에서 제외된다.

(법 제31조 제1항, 제2항 및 제4항)

2) 재정위원회에 의한 대표당사자 선정
당사자가 다수인 경우 절차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대표당사자의 선정을 명함(법 제32조) 공동 이해당사자가 선정명령을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않을 때는 공동이해당사자중에서 대표당사자를 위원회의 직권으로 선정하되, 대표당사자의 자격은 특정쟁점의 심리에 한정이 가능하다(법 제33조)

마. 직권조정

재정위원회는 재정신청된 사건을 조정에 회수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당사자의 동의를 얻어 직권으로 직접조정하거나 지방환경위원회에 송부하여 조정할 수 있으며, 조정에 회부된 경우에는 당사자간에 합의가 성립된 때에는 재정의 신청은 취하된 것으로 본다(법 제41조)

바. 심문 및 회의절차

심문절차의 진행에 있어서 당사자의 의견진술은 기일을 지정하여 하고 당사자는 직접 심문절차에의 참여가 가능하다(법 제35조)

개인의 비밀 및 당사자의 사업상 비밀유지 또는 절차의 공평유지 기타 공익상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심문절차를 공개하여 진행하여야 한다.(법 제36조)

사실조사시에는 선서를 하도록 하고 당사자는 사실조사에 직접 참여가 가능하고, 심사관이 사실조사한 내용을 재정자료로 사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이에 대한 당사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법 제37조)

재정위원회의 회의는 비공개가 원칙이다(법 제38조)

사. 재정의 형식 및 효력

1) 재정문서의 형식

사건번호와 사건명, 당사자, 대표당사자 또는 대리인의 이름과 주소, 주문, 신청의 취지, 이유, 재정한 날자를 기재하고 재정위원이 서명·날인한 문서로 작성한다(법 제39조)

2) 재정의 효력

재정문서의 정본이 당사자에게 송달된 날부터 60일이내에 당해 사건의 손해배상에 관한 소송이 제기되지 아니하거나 피고의 동의를 얻어 소송이

취하된 때는 재정내용과 동일한 내용으로 당사자 간의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간주한다(법 제40조)

3) 재정신청의 각하

재정신청이 부적합한 사건인 경우에는 각하하여야 한다(법 제34조)

아. 시효의 중단 등

재정의 신청은 시효의 중단 및 출소기간의 준수에 관하여는 재판상의 청구로 본다(법 제42조)

자. 소송과의 관계

재정의 신청사건에 관하여 수소법원은 재정이 있을 때까지 소송절차를 중지하거나 소송절차의 중지가 없는 경우에는 재정절차를 중지하도록 한다(법 제43조)

차. 재정전의 조치

재정위원회는 재정절차를 진행하기 전에 당사자에 대하여 재정의 실현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행위를 중지하도록 하거나 재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법 제22조 및 법 제44조)

IV. 분쟁조정의 비용 등

1. 분쟁조정절차의 진행을 위한 조치

가. 질서유지를 위한 조치

알선·조정 또는 재정을 원활히 진행시키기 위하여 당해 절차를 방해하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퇴장을 명하는 등 직무의 원활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시행령 제29조)

나. 기록의 열람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위원회에서 사건기록의 열람을 서면으로 신청하여 분쟁사건에 관한 기록은 열람을 할 수 있다(시행령 제30조)

다. 관계기관에의 협조요청

중앙 또는 지방환경위원회는 알선·조정 또는 재정절차에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관계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환경오염피해 발생원인의 조사에 관한 자료의 제출, 의견개진 및 기술적 지식의 제공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한다(법 제46조)

2. 분쟁조정의 비용

가. 조정비용

중앙환경위원회의 알선·조정 또는 재정절차에 필요한 비용 중 위원 및 관계 직원의 출장비, 참고인·감정인의 출석비용, 협조인의 출장비용 및 우편료 전신료 등은 국가가 부담한다(법 제47조, 시행령 제31조)

나. 신청 수수료

알선·조정 또는 재정을 신청하는 자 및 당해절차의 참가인은 소정의 수수료를 수입인지 또는 수입증지 납부하여야 하고, 알선·조정 또는 재정을 구하는 가액이 취지의 변경 등으로 증가할 때에는 증가전 수수료와 증가후의 수수료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수입인지 또는 수입증지로 납부하여야 한다. (법 제48조, 시행령 제32조 및 별표)

[별표] 분쟁조정신청수수료

| 환경오염피해청구액별 수수료 | |
|----------------|--|
| 알선신청 | 10,000원 |
| 조정신청 | 1. 환경오염피해 청구액 500만원이하 : 10,000원 2. 환경오염피해 청구액 500만원초과 5천만원이하 : 1의 수수료에 5백만원을 초과한 10,000원마다 15원을 가산한 금액 3. 환경오염피해 청구액 5천만원초과 : 2의 수수료에 5천만원을 초과한 금액 10,000원마다 10원을 가산한 금액 |
| 재정신청 | 1. 환경오염피해 청구액 500만원이하 : 20,000원 2. 환경오염피해 청구액 500만원초과 5천만원이하 : 1의 수수료에 5백만원을 초과한 10,000원마다 30원을 가산한 금액 3. 환경오염피해 청구액 5천만원초과 : 2의 수수료에 5천만원을 초과한 10,000원마다 20원을 가산한 금액 |
| 참가신청 | 1. 조정 절차 참가신청 : 당해 참가인의 환경오염피해 청구액에 대하여 조정신청의 수수료 산출방법에 의하여 산출한 액 2. 재정 절차 참가신청 : 당해 참가인의 환경오염피해 청구액에 대하여 재정신청의 수수료 산출방법에 의하여 산출한 액 |

비고 : 환경오염피해청구액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청구액을 500만원으로 한다.

3. 문서의 송달 및 처리결과의 통보

중앙 또는 지방환경위원회의 위원장은 관계문서를 민사소송법 중 송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관계인에게 송달하고, (법 제49조) 분쟁의 처리결과를 환경처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법 제50조)

V. 맺음말

환경보전은 경제발전에 상응하는 쾌적한 환경

을 조성하여 국민의 환경권을 보장하는데 그 주안점을 두어야 한다. 또한, 환경보전을 통하여 공기·물 그리고 인간삶의 질을 향상시킴으로서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이룩하는데 도움을 받을 수도 있다.

환경문제는 정부·기업 그리고 국민 어느 경제주체 하나의 문제가 아니라 모두가 힘을 합하여 해결하여야 할 시급한 과제인 것이다. 각 부문별로 살펴보면 정부에서는 환경기초시설의 확충을 위한 투자확대, 오염감시기능의 강화 및 환경오염 피해 구제기능의 활성화에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하고, 기업은 환경오염의 사전예방을 위한 저공해 기술의 개발, 방지시설의 설치와 운영 및 환경오염피해가 발생한 경우의 사후구제에 적극 협력하여야 하며, 국민들도 일상생활에서 환경오염을 최소화하는데 적극 노력하는 한편, 환경보전의 최종적인 주체라는 의식을 가지고 환경오염감시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

